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14(목)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좁강 활성화 조례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09호
- 나. 제 출 자 : 운영회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줍깅 활동의 정의(제2조)
- 나. 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제4조)
- 다.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내용(제5조)
- 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줍깅 주간 지정(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9. 5. ~ 9. 12.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환경보호 및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줍깅 활동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줍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과 외국어의 합성어이며,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2023. 5. 22) 타 시도에서는 ‘플로깅’, ‘쓰담달리기’,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타 시도 플로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 명	공포일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21.11.2.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1.12.29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2.16.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2.10.12.

-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plogging)’이란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줍다’와 ‘조깅’을 합해 ‘줍깅’이란 우리말과 외래어의 합성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 ‘줍다’라는 의미의 스웨덴 ‘plocka upp’과 ‘느린 속도로 달리기’라는 뜻의 영어 ‘jogging’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의 에리크 알스트룀(Erik Ahlström)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쓰레기봉투를 들고 조깅,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서 눈에 뜨이는 대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의미함.(출처 : 다음 백과)

2) 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제4조)

3)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줍깅 주간 지정(제5조, 제6조)

- 줍깅 활성화를 위한 줍깅 활동을 공적 영역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우리 구 조례에서 환경보호 및 주민 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중복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줍깅 활동의 최종 목적은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라고 볼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책은 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바탕이 되므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줍깅 지원 및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 현황>

조례명	조	내용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제20조 (실비 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의3 (구민의 참여)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주민운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 주민의 복지증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